기후·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

2010. 7. 7 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기후 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 센터는 기후·환경 변화 예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후·환경 변화 예측에 관한 단독 및 국제·국내 공동 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
2. 정부기관, 학계, 출연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3. 다학제간(환경공학, 대기과학, 컴퓨터, 수리과학, 과학교육 등) 연계 및 외국대학과의 연구·교육 교류를 통한 기후·환경 변화 예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
4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5. 기후·환경 변화 연구 관련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움 개최
6. 기후·환경 변화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
7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소장·부소장) ①센터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
③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조직) ①센터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실, 기후 환경변화 모니터링/평가 연구실, 기후변화 적응/예측 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실은 기후변화 분석 및 시나리오 생산, 대기화화/에어로졸 변화 예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기후·환경변화 모니터링/평가 연구실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/수환경 반응양상 분석 및 모델적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기후변화 적응/예측 연구실은 기후변화 관련 환경시스템 상호작용 진단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5 조 (실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

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행정인력) ①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·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1 조 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제 12 조 (존속기간) ①센터는 그 설립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설립근거가 된 사업 종료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.

부 칙(2010. 7. 7 제정)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